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이등급 8급 신설〉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89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상이등급 8급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5. 1. 2.
3. 회부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

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1항).

Ⅲ.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 <u>6급</u> 및 <u>7급</u> 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 ----- ----- ----- <u>6급·7급 및 8</u> <u>급</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까지 나누고 있으며,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은 7개의 등급 중 1등급과 6등급은 3개의 등급으로 세분화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과 같이 등급을 추가할 경우, 법률에는 등급의 구분만 규정할
뿐이고, 구체적인 구분과 판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됨.

□ 2024년 12월 기준 상이등급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1급 1,194명,
2급 985명, 3급 5,641명, 4급 1,762명, 5급 9,749명, 6급 50,796명,
7급 46,714명 등 총 116,841명이며, 등급기준 미달자는 68,159명으로
집계됨.

<상이자 대상별 등록현황>

<‘24.12월 말 기준>

구분	총계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7급
총계	116,841	247	579	368	985	5,641	1,762	9,749	11,436	36,176	3,184	46,714
전상 군경	56,217	3	89	86	330	2,964	585	4,998	6,490	21,758	2,805	16,109
공상 군경	48,902	179	400	244	530	2,272	922	4,128	4,315	12,560	206	23,146
공상 공무원	3,202	22	59	29	92	317	167	362	363	793	1	997
지원공상 군경	1,737	7	7	1	3	14	12	43	54	213	2	1,381
지원공상 공무원	493	1	7	5	7	19	13	32	52	86	1	270
재해부상 군경	6,074	21	12	3	18	50	55	178	142	720	168	4,707
재해부상 공무원	216	14	5	—	5	5	8	8	20	46	1	104

※ 등급기준미달자 : 68,159명(일반상이·고엽제후유증, ‘24.12월말 현재, 사망자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
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현행 상이등급 중 최저등급인 7급의 경우 신체장애율이 10% 수준으로 한 귀 70퍼센트 이상 상실, 치아가 5개 이상 상실 되어 보철을 한 사람, 한쪽 팔의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등이 해당됨. 등급미달자는 최저등급인 7급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신체장애율이 10% 미만인 자를 뜻함.³⁾

- 상이등급 유공자에게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로 차등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취업·의료·대부 지원 등을 하고 있음.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급별 지원내역>

구분		1급-5급	6급	7급
보훈급여금	본인	○	○	○
	배우자	○	○	×
교육지원	본인	○	○	○
	자녀	○	○	△ 생활정도 고려
취업지원	본인	○	○	○
	배우자	○	○	○
	자녀	○	○	×
	부모	○	○	×
의료지원		국비	국비	본인 10%부담
대부지원		○	○	○
주택우선공급		○	○	○

자료: 국가보훈부

3) 우리 법체계상 상이기준의 판단기준은 신체장애률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에 등급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체장애률도 병기함.

<재해부상군경 국가유공자 등급별 지원내역>

구분		1급-5급	6급	7급
보훈급여금	본인	○	○	○
	배우자	○	○	×
교육지원	본인	○	○	○
	자녀	○	○	△ 생활정도 고려
취업지원	본인	○	○	○
	배우자	○	○	○
의료지원		국비	국비	본인 10%부담
대부지원		○	○	○
주택우선공급		○	○	○

자료: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으로서 등급기준 미달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처에 대한 의료지원과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⁴⁾⁵⁾

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업지원 등)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상이등급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61년 1~3급(현재 기준 1~6급)으로 시작하여 1999년까지 큰 틀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9년 당시 신체검사 최저등급인 6급2항의 신체장애율이 25%~35%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여 신체장애율 10% 수준의 7급을 신설한 바 있음.⁶⁾

<상이등급 세분연혁>

구 분	'61	'75	'79	'87	'88	'89	'00~'12.6.	'12.7.~	
등급 수	3개	4개	5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등 급 구 분	1급	특급	특급	특급	1급1항	1급1항	1급1항	1급1항	
		1급	1급	1급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2급	2급	2급갑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을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6급	6급1항	6급1항	6급1항	
						6급2항	6급2항	6급2항	6급2항
	신 설							7급	6급3항 7급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상 유공자 등급구분을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상이등급 중 최저등급인 7급의 경우 신체장애율이 10% 수준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다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6) 당시 개정안은 '신체장애율 5퍼센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등급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었으나, 신체장애율 개념이 기존의 상이등급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5% 기준은 외국(최저 신체장애율 10~20% 수준)에 비해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7급을 신설함.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 중 12급과 비슷한 수준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은 1~14급까지 14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등급의 노동력상실률은 5% 수준임. 1~7급까지는 연금을 지급하고, 8급(노동력상실률 50%)부터는 일시금을 지급함.

<장애등급과 상이등급 비교>

산재보험법 장애등급 12급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7급
○ 한쪽 팔의 1개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한쪽 팔의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한쪽 다리의 1개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한쪽 다리의 1개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한쪽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	○ 한 귀 70퍼센트 이상 상실
○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치아가 5개 이상 상실 되어 보철을 한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	○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
○ 머리 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	○ 머리 외상이나 턱 주위 조직의 손상 또는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신체장애율 최저 지원 기준은 미국 10%, 호주 10%, 일본 15%, 영국 20%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7급 등급의 신체장애율은 10% 수준보다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함.

○ 대한민국의 오늘은 조국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으로 이어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되었으며, 국가보훈은 이와 같이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발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거나 특별한 공을 세운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⁷⁾

○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상이등급 8등급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존립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법체계상 법률은 1등급~7등급으로 구분만 하고 있을 뿐, 각 등급의 세부 기준 및 지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도 개정안의 취지 달성이

7) 이해영, 2023,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7등급을 1등급 및 6등급과 같이 몇 개의 세부 등급으로 나누어, 현재의 최저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의 등급을 신설하고,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상 및 지원범위를 점진적·탄력적으로 조정·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관해 국가보훈부는 상이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가 재정소요⁸⁾와 상이정도가 중한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⁹⁾

문 의 처

02)6788-5110

8) 국가보훈부는 개정안과 같이 8급 신설 시 연평균 5,278억원(보상금은 7급의 50%의 적용)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그러나 이는 등급미달자 전원이 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상금·교육·의료·보철구·대부·취업·요양·보훈재가복지·수송 등의 분야에 빠짐 없이 지원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예산은 국가보훈부의 추계보다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함.

9) 기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신설되는 8등급의 지원 내용을 다른 등급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1

각종 현황 및 통계

□ 상이자 대상별 등록현황

<‘24.12월 말 기준>

구분	총계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
총계	116,841	247	579	368	985	5,641	1,762	9,749	11,436	36,176	3,184	46,714
전상 군경	56,217	3	89	86	330	2,964	585	4,998	6,490	21,758	2,805	16,109
공상 군경	48,902	179	400	244	530	2,272	922	4,128	4,315	12,560	206	23,146
공상 공무원	3,202	22	59	29	92	317	167	362	363	793	1	997
지원공상 군경	1,737	7	7	1	3	14	12	43	54	213	2	1,381
지원공상 공무원	493	1	7	5	7	19	13	32	52	86	1	270
재해부상 군경	6,074	21	12	3	18	50	55	178	142	720	168	4,707
재해부상 공무원	216	14	5	-	5	5	8	8	20	46	1	104

※ 등급기준미달자 : 68,159명 (일반상이·고엽제후유증, ‘24.12월말 현재, 사망자 제외)

□ 상이등급구분 제도변천 연혁

○ 상이등급 세분연혁

구 분	'61	'75	'79	'87	'88	'89	'00~'12.6.	'12.7.
등급 수	3개	4개	5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등 급 구 분	1급	특급	특급	특급	1급1항	1급1항	1급1항	1급1항
		1급	1급	1급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2급	2급	2급갑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을	3급	3급	3급	3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6급1항	6급1항	6급1항	
			6급2항		6급2항	6급2항		
	신 설							7급
							7급	

○ 주요 변경내용

연 도	법 적 근 거	주 요 내 용
'61.11.1.	군사원호보상법 별표1 상이군경등급기준표	1-90호(상이군경등급기준표) ※신체검사표 : 상이군경상이분류심사규정(∼61.4.30.) 상이군경의료규정 *대통령령
'62.12.24.	”	3개 등급 (간호대상자, 취업불능자, 취업가능자)
'68.7.10.	”	3개 등급 (1급, 2급, 3급)
'73.1.1.	상이군경의료규정 (대통령령)	특수 신체상이 신설(특수, 1~3급) * '75.2.7. 특수등급 군사원호보상법 반영
'74.12.24.	”	세부분류 신설
'79.8.29.	”	5개 등급 (2급 → 2급갑·을로 구분)
'87.11.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7개 등급 (특급 ~ 6급, 4 ~ 6급 신설)
'88.1.1.	”	8개 등급 (특·1급 → 1급1항·1급2항·1급3항으로 세분)
'89.11.1.	”	9개 등급 (6급 → 6급1항·6급2항으로 세분)
'00.1.1.	국가유공자법	10개 등급 (7급 신설)
'12.7.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11개 등급 (6급3항 신설)

□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액('25년)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단위: 천원)
1급 1항	3,865	5급	2,015
1급 2항	3,645	6급 1항	1,839
1급 3항	3,489	6급 2항	1,693
2급	3,103	6급 3항	1,137
3급	2,900	7급	651
4급	2,433		

※ 유족(배우자) 보상금: (1급~5급) 1,765천원, (6급) 648천원

□ 전·공상군경 주요 지원사항

<‘25.1월 기준>

구 분	전 · 공상군경
보상금 수당	○ 보상금 지급 : 상이등급 1급 ~ 7급(11등급) - 매월 651~3,865천원(수당 미포함) * 6급 이상 유족 승계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및 6급 이상 자녀 채용시험의 가점,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자녀는 30세 이하, 7급 상이자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의료지원	○ 본인에 대해 모든 질병 국비진료 * 7급은 상이처 외 일부 부담
대부지원	○ 대부지원 실시
수송시설	○ 열차, 선박, 항공, 고속버스, 지하철 등 수송시설 지원
보철용차량 지원	○ 지방세 등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5급까지 면제) LPG차량 국고보조금 지급(월 300ℓ)
안장지원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및 국립호국원 안장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사항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 원 내 용(제대군인법)	근거
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미만)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제16조①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 직원 20인 이상 재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200인) 권장사항	제16조③
	의 료 지 원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제20조①
		❖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제20조④
	취업지원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실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만 해당	제14조③

참고2

대상인원 및 비용추계

□ 대상 인원 추계(8급)

(단위: 명)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전상군경(고엽제 포함)	33,784	34,386	34,998	35,621	36,255
공상군경	8,117	8,261	8,408	8,557	8,710
재해부상군경	27,124	27,607	28,099	28,599	29,108
기타	347	353	359	366	372
합 계	69,372	70,607	71,864	73,143	74,445

- ① '25년 인원은 '24년도 국가보훈기본 통계의 등급기준미달 전체 인원 × 연평균 증감률 × 최근 3년간 등급기준미달 판정된 사람 중 대상별 비중*
- * 전상군경(고엽제 포함) : 48.7%, 공상군경 : 11.7%, 재해부상군경 : 39.1% 적용
- ② 연차별 인원은 최근 3년('22 ~ '24년) 등급기준미달자 연평균 증감률(1.78%) 적용
- ③ 등급기준미달 받은 사람 모두 8급으로 추계함

□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보상금 (7급 50% 적용)	270,967	275,791	280,701	285,697	290,782	1,403,938	280,788
○교육지원	12,189	12,948	13,782	14,643	15,529	69,091	13,818
○의료지원(보훈병원)	101,844	110,817	120,586	131,219	142,796	607,262	121,452
○의료지원(위탁병원)	65,341	67,369	69,459	71,615	73,837	347,621	69,524
○보철구	5,109	5,299	5,496	5,699	5,911	27,514	5,503
○대부지원	4,650	4,733	4,817	4,903	4,990	24,093	4,818
○취업수강료 지원 등	382	386	393	400	408	1,969	394
○요양지원	1,568	1,632	1,685	1,753	1,822	8,460	1,69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3,815	3,885	3,955	4,025	4,095	19,775	3,955
○수송시설	6,251	10,167	11,173	12,232	13,350	53,173	10,635
○보철용차량 지원	5,927	6,035	6,139	6,250	6,362	30,713	6,143
○장례지원금 등	319	325	331	337	342	1,654	331
○안장지원	8,727	8,491	8,660	8,812	8,970	43,660	8,732
총 계	487,089	507,878	527,177	547,585	569,194	2,638,923	527,785

